

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
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

통보자	성명	
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:)
지하 시설물	명칭	
	위치	
안전조치 결과		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.

붙임: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사진 등

년 월 일

통보자: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